

춘천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가단265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강원도 양구군 E 전 536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86. 10. 31. 접수 제3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